

2024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신청안내

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(귀)농어업인, 농어업 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 등에 총 50억원의 농어촌육성자금을 융자합니다.

 **융자대상 및 대상사업과 융자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**

□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

- 융자대상 : 울산광역시 내 (귀)농어업인, 농어업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 등
-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
 -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
 -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
 -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
 - 농·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
 -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※ 육성자금 융자 제외대상

- *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, 선진지견학,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
- * 직계존·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 비용, 토지 구입비용
- * 어선(오징어채낚기, 중형기선저인망 등)에 사용되는 유류대
- * 특정 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 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,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

□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

- 융자계획 : 50억원
- 융자한도 : 총 사업비의 70% 이내
 - 귀농어업인, 농어업인 : 7천만원까지(시설 + 운영)
 - 법인체, 생산자단체 조직 : 5억원까지(시설 + 운영)

□ 대출금리(농업인부담) : 보증서 0.5%, 담보 0.5%, 신용 1.1%

□ 용자조건

- 시설자금 :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
- 운영자금 : 3년 거치 일시상환

□ 용자 취급기관

-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, 울주군지부, 서울산금융센터
-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

☞ 용자신청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.

- 용자신청기간 : 2024. 1. 2. ~ 1. 31.
- 용자신청 장소 및 방법 :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신청서류 : 용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

☞ 용자대상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.

- 사업 신청 → 읍·면·동 추천 → 구·군 농어업·농어촌식품사업정책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·군수 추천 →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 심의회 심의 의결 → 시장 확정 및 구·군 통보 → 용자실행

【문의처】

-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☎ 229 - 2944
- 중구 지역경제과 ☎ 290 - 3333, 남구 경제정책과 ☎ 226 - 5661
동구 해양농수산물과 ☎ 209 - 3372, 북구 농수산물과 ☎ 241 - 8054
울주군 농업정책과 ☎ 204 - 1512, 울주군 축수산물과 ☎ 204 - 1612
- 각 구·군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☎ 258 - 4402, 서울산금융센터 ☎ 289 - 5453
울주군지부 ☎226 - 0800,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축협
중울산☎296-3101, 중앙☎224-3260, 강동☎295-8311, 농소☎295-1621, 두북☎262-6169,
삼남☎263-8812, 서생☎239-5303, 온산☎238-2311, 웅촌☎225-0022, 범서☎211-7991,
상북☎264-9922, 언양☎264-0170, 온양☎238-3216, 청량☎268-6780, 방어진☎234-5501